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79 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이주영・이준석・천하람

박준태 • 김미애 • 유용원

김용태 · 김대식 · 최수진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.

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,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,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또는 진료를"을 "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"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"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"을 "폭행한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2조(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) | 제12조(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) | | |
|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| ① | | |
| 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| | | |
|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「의 | | | |
| 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| | | |
| 무사를 포함한다)와 구급차등 | | | |
| 의 응급환자에 대한 <u>구조·이</u> | <u>상담 • 구조 •</u> | | |
| <u>송·응급처치 또는 진료를</u> 폭 | 이송・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- | | |
| 행, 협박, 위계(僞計), 위력(威 | | | |
| 力),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 | | | |
| 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 | | | |
| 를 위한 의료용 시설·기재(機 | | | |
| 材)・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 | | | |
| 물(器物)을 파괴・손상하거나 | | | |
|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. | |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 |
| 제60조(벌칙) ① 「의료법」 제3 | 제60조(벌칙) ① | | |
| 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 | | | |
| 에서 응급의료종사자(「의료기 | | | |
| 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| | | |
| 따른 의료기사와 「의료법」 | | | |
|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| | | |
| 포함한다)를 폭행하여 상해에 | 폭행한 사람 | | |

| 이르게 한 | <u>사람</u> 은 | 10년 | 이하의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징역 또는 | 1천만원 | <u></u> 이상 | 1억원 |
| 이하의 벌 | 금에 처 | 하고, | 중상해 |
| 에 이르게 | 한 사림 | t은 3t | 현 이상 |
| 의 유기징 | 역에 처 | 하며, | 사망에 |
| 이르게 한 | 사람은 | 무기 | 또는 5 |
| 년 이상의 | 징역에 | 처한디 | ŀ . |

② ~ ④ (생 략)

| 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|